

1. 개정이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또는 실적에 따른 가산점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의무화(안 제24조)

-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위에 전보된 날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나. 민원 분야 실적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5조의2)

규칙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결과”를 “결과(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 평정 의견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으로, “근무경력”을 “해당 계급 근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영 제32조제2항제5호”를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로, “근무한”을 “전보된 날부터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가목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가목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

제2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나목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나목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4조제4항,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기준은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u>결과</u> 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u>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 ----- ----- ----- <u>결과(제3조 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u><단서 삭제></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생략)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삭제	
④ 임용권자는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근무경력</u> 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u><단서 신설></u>	④ ----- <u>5급 이하 공무원 · 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 해당 계급 근무경력-----</u> . <u>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u>	2. <u>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u>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u>근무한</u> 경력 <u><신 설></u> ⑤ 삭 제 ⑥・⑦ (생 략)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생 략) <u><신 설></u>	<u>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 제6호----- 전보된 날부터 근무한 -----</u>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가목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제6호의2가목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에 <u>근무한 경력</u> ⑥・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에 <u>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나목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나목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	---